

제주지방법원 2018. 12. 20 선고 2018가단662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2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4. 8. 31. 접수 제394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 주문 제1항과 같다.

예비적으로,

- 가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4. 8. 31. 접수 제394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. 8. 27.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나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4. 8. 31. 접수 제394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자 피담보채권의 소멸을

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태우

별지